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4.9.20.)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의 ‘보고’를 ‘제출’로 조문의 제목 및 문구를 정비 (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보고 등)”을 “(자료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는”을 “자료의 제출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 ----- ----- ----- ----- ----- ----- ----- ----- ----- <u>제출</u>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u>제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보고</u> 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 <u>자료의 제출</u> 은 ----- ----- -----.